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2009. 11. 23.

규정 제85호

개정 2010. 1. 2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거하여 이 회가 행할 외국법자문사의 각종 등록·신고 및 등록거부·등록취소에 관한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이하 “등록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절차와 운영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회에 등록하려는 외국법자문사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회에 등록하려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적용한다.

제3조 [명부의 비치] ① 이회는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외국법자문사명부(이하 “외국법자문사명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주소 및 등록기준지(외국인은 본국 및 한국 주소)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자격승인의 연월일 및 사유
5.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6. 업무개시 및 휴업에 관한 사항
7. 자격승인취소 및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8. 징계에 관한 사항
9. 원자격국
10. 외국변호사의 자격 명칭 및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 연월일
11. 제6조 제2항의 등록 및 등록갱신 사항 변경 연월일 및 사유

② 이회는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이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라 하며, 외국법자문사명부와 총칭하여 이하 “명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4. 설립인가 연월일
5.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6.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내용
- 7. 설립인가취소 및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 8. 제28조 제2항의 등록사항 변경 연월일 및 사유

제4조 [명부의 작성] 명부는 이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 회가 작성한다. 다만,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직권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명부의 보관 보존] ① 명부는 멸실,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 영구 보존한다.

- ② 명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반출할 수 없다.
- ③ 명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등록증서, 등록통지, 등록보고, 회계재사항 기타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 2 장 외 국 법 자 문 사

제 1 절 등 록

제6조 [외국법자문사등록 등의 신청] ①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법자문사등록을 하거나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등록사항이 기재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2. 이력서
 - 3.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4. 사진
 - 5.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된 서면
 - 6. 외국변호사로서 받은 상벌 및 직무상 감독기관에 의한 직무경험연수에 관한 평가를 기재한 서면
 - 7. 별지 1 양식의 서약서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주소 및 등록기준지(외국인은 본국 및 한국 주소)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자격승인의 연월일 및 사유
5.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6. 업무개시의 연월일
7. 원자격국
8. 외국변호사의 자격 명칭,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 연월일

제7조 [이 회의 처리] ① 제6조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 회의는 이를 심사하여 등록신청 또는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장은 소관 상임이사 또는 소관 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회의는 심사결과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심사결과 제8조에 정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의 거부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거부의 사유] 이 회의는 제6조에 의한 외국법자문사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과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7조에 따라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4.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되거나 법 제13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등록거부 등] ① 등록심사위원회가 협회장으로부터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거부안건을 회부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등록거부의 가·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거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록거부를 의결한 때에는 협회장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거부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등록거부를 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협회장은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된 자는 등록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간주 및 등록명령의 처리] 이 회의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에 의한 등록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의 절차] 협회장은 제7조 제3항, 제9조 제3항 및 제11조에 의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명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서와 함께 등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료의 납부] ① 이 규정에 의한 각종 등록 또는 등록갱신 등을 신청한 자는 이 회가 정한 등록료 또는 등록갱신신청수수료 등을 등록신청서류 또는 등록갱신신청서류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등록료와 등록갱신료 등은 이 회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제14조 [신고] ① 외국법자문사가 제6조 제2항에 정한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추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변동신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이 회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로부터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 회의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고,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 회의는 제1항에 의한 신고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그 수리를 보류하고, 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 2 절 등록취소

제15조 [등록취소의 구분] 이 규칙에 의한 등록취소는 다음의 2종으로 나눈다.

1.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2. 신청에 의한 등록취소

제16조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① 이 회의는 등록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외국법자문사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없거나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3.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외국법자문사가 이 회의에 변호사로 등록한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② 등록외국법자문사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 회의는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조회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협회장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취소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19조 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취소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외국법자문의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한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에 의한 등록취소] ① 등록외국법자문사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록취소를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 외국법자문사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장이 징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징계개시신청여부 또는 징계개시청구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수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9조 [등록취소의 절차] ① 이 회가 등록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명부에 그 사유와 취소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명부용지를 폐쇄한다.

② 협회장이 제1항에 의한 등록취소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통지서를 당사자(사망의 경우 제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 당사자는 제2항에 의해 등록취소통지서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등록증명서를 이 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3 절 등록심사위원회

제2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판사 1인, 검사1인, 변호사 4인, 협회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인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인으로 구성하고, 동 자격을 갖춘 동 수의 예비위원을 둔다.

② 판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검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장관의 각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법학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위원 및 예비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

한 자이어야 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변호사인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이 사고, 결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명하는 동 자격의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친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심사 및 의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기구] ① 등록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등록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등록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등록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등록심사위원회는 업무를 보조하는 1인 이상의 서기를 둘 수 있다. 서기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협회장이 지명한다.

제23조 [안건의 회부] 협회장이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사유 등을 기재한 안건회부서와 관련자료를 등록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심사기일의 통지 등] ①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의 안건이 회부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사기일을 정하여 위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심사위원회는 최초 심사기일의 7일 전까지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일에 출석한 당사자에게는 다음 심사기일을 고지할 수 있다.

②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심사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최초 심사기일의 통지서에는 안건회부서에 기재된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사유의 요지를 기재한다. 또한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

으며, 대리인의 선임이나 심사의 공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아울러 기재하여야 한다.

④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에 의한다.

⑤ 삭제 (2010. 1. 25.)

⑥ 삭제 (2010. 1. 25.)

제25조 [당사자 등의 권리 등] ①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외국법자문사를 보조인으로 각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이 규정이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안전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등록심사위원회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해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심사기록과 증거물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⑤ 협회장은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안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대리인 또는 보조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법률사무소의 소재지 및 소속지방회 등을 등록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 또는 보조인을 해임한 경우에도 같다.

⑦ 보조인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함께 등록심사위원회에 출두하여 이들을 보조할 수 있다. 보조인의 진술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즉시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 진술로 간주한다.

제26조 [심사] ① 심사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하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등록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수 개의 안전의 심사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또는 등록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또는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1인 또는 수인을 정하여 당해 안전에 대한 심사의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지정받은 위원은 안전의 심사준비에 관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심사기일에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에는 심사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의 성명, 공개여부, 심사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7조 [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등록심사위원회는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결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28조 [등록신청] ①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2항의 등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제2항 제6호를 증명하는 서류 및 기타 이 회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4. 설립인가 연월일
5.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내용

제29조 [등록심사] ① 이회는 전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회는 전조 제1항의 등록신청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신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회에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의 비치, 열람 등] ① 이회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적힌 서면
2. 설립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서면
3.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이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를 비치하고 제28조 제2항의 등록사항, 제30조에 의한 각종 신고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32조 [공고] 이 회가 제30조에 의한 각종 신고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2010. 1. 25. 개정)

제33조 [시행세칙]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